

서울시보

Hi Seoul
SOUL OF ASIA

서울시 홈페이지 | www.seoul.go.kr

제3045호 2011. 05. 31.(화)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세빛동동섬

기관의 장		공 람								
선 람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편집인 | 시민소통기획관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731-6113

목 차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11-964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제2011-965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제2011-99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

제2011-999호 서울특별시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4

제2011-1000호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4

제2011-1001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

제2011-1002호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

제2011-1003호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

제2011-1004호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7

제2011-1005호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8

자 치 법 규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964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5월 31일
서울특별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문화산업 육성·지원 업무를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경제진흥본부로 이관하고,
- 나. 한시기구인 G20정상회의지원단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 731-6152, FAX : 731-6309, E-mail : sola20@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965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5월 31일
서울특별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G20정상회의지원단(한시기구)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3급 정원 1명과, 시설물관리경비 등 단순행정관리사무 민간위탁에 따른 정원 62명을 감축하고,
- 나. 시의회사무처 부서 신설, 하도급개선담당관 및 투자기관 지원관련 기구신설 등에 따른 일반 직 정원 18명과 한성백제박물관 개관 준비 등을 위한 연구직 정원 8명, 시립대학교 특성화 분야 육성을 위한 교수요원 12명, 강북소방서 신설 예정 및 소방공무원 3교대 실시에 따른 소방직 251명을 증원하여,
- 라. 총정원을 16,056명에서 16,282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임

2.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 731-6184, FAX : 731-6309, E-mail : sola20@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99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의의회 의원들의 전문성과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무처의 조직을 정비·보강하여 입법 및 예산심사 지원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사무처 조직 중 정책연구실을 삭제하고, 입법담당관과 예산정책담당관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참조 : 기획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획담당관 (전화 : 02)731-6133, FAX : 02)731-6135, E-mail : yeonhm@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999호

서울특별시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를 폐지함에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5월 31일
서울특별시장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의존재원의 비율이 높아 특별회계 존치의 필요성이 떨어지고 칸막이식 재정운영으로 시민들의 이해를 어렵게 하는 단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일반회계로 통폐합·운영함으로써 도시철도건설사업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조례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총정로 50 동아일보 B/D 11층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 전화 : 3708-2324, FAX : 3708-2327, E-mail : leenamyul@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000호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5월 31일
서울특별시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의존재원의 비율이 높아 특별회계 존치의 필요성이 떨어지고 칸막이식 재정운영으로 시민들의 이해를 어렵게 하는 단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일반회계로 통합·운영함으로써 교통사업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조례의 폐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참조 : 교통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 2동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교통정책과(전화 : 6360-4919, FAX : 3707-9729, E-mail : donintrude@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001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5월 31일
서울특별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민의 재정인해를 쉽게하고 재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차장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에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참조 : 주차계획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별관 2동 5층, 전화:02)6321-4270, FAX:02)3707-9809, E-mail : chulwon @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002호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5월 31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의존재원의 비율이 높아 특별회계로서의 존치 필요성이 떨어지고 칸막이식 재정운영으로 시민들의 이해를 어렵게 하는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합·운영하여 광역교통시설사업 재정을 효율적이고 투명성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를 제명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조례』로 함
나. 3장(제13조부터 제 16조까지)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교통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 2동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교통정책과(전화 : 6360-4919, FAX : 3707-9729, E-mail : donintrude@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003호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5월 31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설치지원 등을 위해 설치하였으나 일반회계 재정여건에 따라 사업비 편성이 유동적이고, 일반회계 사업과의 차별성이 모호하여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특별회계의 설치, 세입의 특별회계 전입비율, 특별회계의 용도 등 도시개발특별회계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함
- 나. 도시개발특별회계를 폐지하더라도 용자사업을 일반회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용자사업의 범위 및 용자조건은 그대로 존치함
- 다. 부칙의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제2조제2호 중 “서울특별시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서울특별시”로 개정함
- 라. 폐지되는 서울특별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로 승계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참조 : 도시개발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개발과(전화 : 2171-2047, FAX : 2171-2715, E-mail : seawater@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004호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5월 31일
서울특별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현행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와 「서울특별시 재정비축진특별회계」는 설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이 달라 별도의 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재정비축진사업 등 사업목적이 유사하므로 「재정비축진특별회계」를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별도 계정으로 통합·운영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재정비축진사업계정과 재정비축진사업계정의 세입·세출에 관한 부분과 재정비축진사업의 용자조건 등을 신설함
- 나. 부칙의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중 재정비축진특별회계 조항인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주택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192-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택정책과(전화: 3707-8247, FAX: 3707-8229, E-mail: hsnuri@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005호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5월 31일
서울특별시장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복구공사 및 사후관리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일반회계로 운영이 가능하여 기금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떨어지므로 기금을 폐지후 일반회계로 운영하기 위해 동 기금의 설치 근거인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도시안전본부 도로관리과,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4-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로관리과(전화 : 3707-8330, FAX : 3707-8160, E-mail : atom65@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